

農水産産 加工食品 標準化에 관한 運營要綱 解説

朴 武 鉉
〈農開公 綜合食品研究院・農博〉

정부가 지난 4월 1일 공업표준화법시행령을 개정(대통령령 제11884호, 86년 4월 8일) 농수축산가공식품의 標準化業務를 工業振興廳長으로부터 農水産部長官에 위탁 하였다. 이에 따라 農水産部는 후속조치로 86年 9月 23日 農水産部告示 제86-29호로 加工食品標準化에 관한 運營要綱을 제정, 공고하였다. 본 요강은 加工食品의 標準化業務에 관한 세부절차와 실무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제 1 장 목적, 제 2 장 표준심의회(부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제 3 장 규격의 제정 및 개정 확인, 제 4 장 표시 지정절차, 제 5 장 표시허가절차, 제 6 장 표시허가공장에 대한 사후관리요령, 제 7 장 교육 훈련 및 업무의 위탁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사항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규격의 제정 및 개정 확인

규격의 제정, 개정 확인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업표준심의회 아래 새롭게 농수축산가공식품부회(식료 제 2 부회)가 구성되며, 부회위원수는 9~15인으로 구성(현재 11명)되고 그 자격은 ① 4년제대학 교수로 5년이상 경력이 있는자, ② 국가연구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③ 생산공장의 경우 기술이사급 이상 경력 소지자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규격의 제정과 기존규격의 개정 확인 및 폐지를 하고자 할 때는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부회에서 지정한 관계전문가에게 案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표시 지정

표시허가 대상품목의 지정 및 품목별 표시허가 심사기준설정은 규격이 이미 제정되어 있는 품목중에서 利害關係人(生産者, 소비자,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등)이 지정신청을 할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필요성을

조사케 하고 KS표시 허가에 필요한 심사기준안을 작성하여 부회에 회부, 심의를 거친 후 지정품목과 심사기준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3. 표시허가

KS표시허가는 표시허가 지정품목에 대하여 이들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공장으로부터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게 된다. 해당품목 생산공장으로부터 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공장심사 일정을 통보한 후 공장검사 및 제품시험을 한 후 그 결과를 취합, 심사보고서가 작성되고 이를 기초로하여 판정회의(주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한 관계 전문가 9~11인으로 구성)에서 허가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허가를 위한 행정절차는 표 1과 같으며 허가의 가부판정을 위한 심사기준과 이 기준에 따른 평가요령은 표 3,4와 같다(운영요강 별표 1,2,3으로 규정).

4. 사후관리

KS표시허가된 공장에서 생산된 KS표시제품의 규격수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는 공장검사와 시판품 품질검사가 있다.

공장검사는 허가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때 의무적으로 허가당시와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하는가를 확인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외의 경우는 표 5의 공장검사실시기준의 검사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KS표시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정부의 KS품질보증의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최후단계의 조치로서, 생산 및 유통과정의 종합평가가 될 수 있다.

식품의 경우 일반 공산품과 달리 유통과정에서의 불량품 발생율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현행 공산품의 경우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시판품 조사를 식품의 경우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5. 사후관리결과에 따른 처분

공장검사 및 시판품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판명되었을 경우 그 경중에 따라 ① 주의 경고, ② 표시변경, ③ 표시정지, ④ 판매금지, ⑤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농수산부 유통국장이 위원장이 되는 처분회의(농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부회위원 및 전문위원 중에서 9~11인으로 구성)에서 표 6의 검사 및 시판품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기준에 따라 결정 하도록 하고 있다.

6. 教育 및 業務 위탁

KS표시허가 공장의 代表者 및 品質管理담당자에게 공업표준협회 및 농어촌개발공사 식품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代表者 2년 담당자 3년 주기).

그리고 농수산부장관은 가공식품표준화업무 중 다음 사항을 농어촌개발공사사장(종합식품

〈표 1〉 KS표시허가 절차

신청인 (생산공장)	경유기관	처리기관 (농수산부)
신청서작성		구비서류검토
		↓
		구비서류보완 지시 및 기술검
		↓
		공장심사
		↓
		시험의뢰
		↓
		판정회의
		↓
		결재 및 허가공
		↓
신청자		허가증교부

연구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① 표준화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수집
- ② 규격안의 작성
- ③ 표시허가를 위한 심사기준안 작성 및 제품시험
- ④ 표시허가품의 시판품 조사
- ⑤ 사후관리 기준안의 작성 및 기술지도
- ⑥ 규격서의 발간 보급 및 교육훈련
- ⑦ 기타 농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표 2〉 표시허가 심사 기준

1. 표준화 일반

심 사 사 항	구 비 요 건
1) 경영간부의 사내표준화와 품질관리에 대한 열의	경영간부는 공업표준화 및 표시제도를 이해하고 품질유지 향상에 대한 열의가 있어야 하며 표준화 및 품질관리 도입 확산에 노력하고 있어야 한다.
2) 사내표준화 및 QC에 대한 교육훈련 정도	기술간부의 대다수는 해당훈련 또는 교육을 필하여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하며 종업원은 해당분야의 교육내용을 숙지하여 사내 규격의 표준화와 전사적인 품질관리활동 등을 추진함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사내 표준화를 위한 품질관리의 조직적인 운영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추진을 위한 관계 각 기능(설계, 구매, 제조, 검사, 판매 등)이 최종 제품의 품질수준을 유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직 또는 기능을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4) 품질관리 담당자 및 기술제인력	품질관리담당자가 있으며 업종과 규모에 맞는 생산 및 검사인력과 연구개발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5)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	사내규격은 제품규격을 정점으로 하여 규격간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해당분야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어야 한다 (사내규격의 종류) ○ 표준화일반에 관한 규정 ○ 유통관리에 관한 규정 ○ 자체관계 규정

심 사 사 항	구 비 요 건
6) 외주공장 관리	○ 공정관계 규정 ○ 제조 및 검사설비 관리규정 ○ 제품의 품질규정 외주공장의 외주품과 품질보증체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외주공장선정기준, 외주공장의 관리 및 연락지도방법등을 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2. 유통관리

심 사 사 항	구 비 요 건
1) 유통제품의 관리	해당 KS규격에 명시된 표시사항과 완제품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품의 특성에 맞는 포장보관, 진열, 운반방법등을 규정,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2) 유통관리 지침 및 교육	유통판매과정에서 제품의 특성에 따라 품질보장이 가능하도록 취급요령지침을 작성하여 지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유통기한 경과 품등 교환대상 제품에 대한 조치	유효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수거하지 않거나 반품대상인 것을 교환하여 주지 않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4) 계약체결 및 이행 상태	유통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제품의 품질저하에 대비한 반품 및 폐기등에 관한 대리점 및 소매상 등 거래처와의 법적효력이 있는 취급계약 약정이 이루어져 실시되고 있어야 한다.
5) 행정처벌 유무	소비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제품의 생산유통과정에서 부정불량식품으로 고발을 받거나 기타의 사유로 감독기관으로부터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행정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6) 불만처리 및 로트추적	불만처리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보와 불만사태에 대한 로트를 추적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공정 에 조치하고 있어야 한다.
7) 과장선전 유무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등의 홍보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표시나 선전을 하여서는 안된다.
8) 제품의 유통조건별 유통기한	제품은 유통조건별로 유통가능기한을 설정 표시하여야 하며 유통

심사사항	구비요건
설정표시	통기한 산출방법은 조사시험을 통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자재의 관리

심사사항	심사항목	구비요건	참고기준
주요소재명		해당제품의 품질이 사내규격에 의거 KS 수준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검사, 관리를 하고 그 검사방법등을 활용하며, 문제발생의 원인분석 및 개선조치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4. 공정관리

심사사항	심사항목	구비요건	참고기준
주요공정명		해당제품 품질이 KS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중간검사 또는 공정관리방법을 규정하고 공정이 안정되도록 하며, 각 공정에 대하여 사용설비, 작업방법, 작업조건, 작업상의 유의사항등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5. 제품의 품질관리

심사사항	구비요건		
검사항목	제품의규격	검사방법	검사실시사항
	해당제품규격을 KS수준이상규체정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제품 품질이 KS수준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기법을 적용	사내 규격에 따라 검사하고 그 기록을 공정개선 및 제품품질 향상에

심사사항	구비요건		
검사항목	제품의규격	검사방법	검사실시사항
		하여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활용하고 있어야 한다.

6. 제조설비사항

주요설비명	구비요건
	당해제품 생산에 적합한 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점검, 보수등의 관리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7. 검사설비사항

주요설비명	구비요건
	해당 제품 생산에 적합한 시험 검사 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정밀 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교정 검사의 대상이 되는 기물은 국가 교정검사 관리 규정(공업진흥청 고시 제82-487호)에 의거 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점검등에 대한 관리사항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어야 한다.

〈표 3〉 표시허가심사기준에 따른 평가

1. 표준화 일반

심사항목	심사내용	부분평가	평점
1) 경영간부의 사내표준화와 리에대한 열의	1) 경영간부 (법인의 경우 이사급이상, 개인의 경우 대표자 및 각 부문의 책임자) 전체가 의무기관에서 실시하는 표준화 및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는 경우 단, 표시승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부분 평가 전항목이 "가"수준일 때 : a ○부분평가에 "다"가 없고 "나"가 포함될 경우 : b ○부분평가에 "다"가 포함될 경우 : c
	2) 최고경영자와 각 부문의 일부 책임자만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단, 표시승인의 경우	나	

심사항목	심사내용	부분평가	평점
	5) 의주공장관리를 주로 수입검사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경우 6) “나”에 미달인 경우	나 다	
종합평가	a = b = c = A B C		

2. 유통관리

심사항목	심사내용	부분평가	평점
1) 유통제품의 관리	1) 유통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한 보관, 운반, 진열등에 대한 장비시설의 수준 및 수량이 완벽하고 그 활용 및 관리방법이 적절히 이행되는 경우 2) 유통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한 보관, 운반, 진열에 대한 장비시설의 수준 및 수량이 전반적으로 적절하고 그 활용 및 관리방법이 다소 미흡한 경우 3) “나”에 미달인 경우	가 나 다	○부분평가 전 항목이 “가” 수준 일때 : a ○부분평가에 “다”가 없고 “나”가 포함될 경우 : b ○부분평가에 “다”가 포함될 경우 : c
2) 유통관리지침 및 교육	1) 유통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지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이를 숙지 활용하는 경우 2) 유통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지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숙지활용이 다소 미흡한 경우 3) “나”에 미달인 경우	가 나 다	
3) 유통기한경과품등 교환대	1) 유통관리상 주요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유효기한경과품에 대한 회수 및 반	가	

심사항목	심사내용	부분평가	평점
상제품에 대한 조치	1) 품질관리를 잘 이행하고 있는 경우 2) 유통과정 관리상 주요사항을 준수하고 유효기한 경과품에 대한 회수 및 반품관리가 다소 미흡한 경우 3) “나”에 미달인 경우	나	
4) 계약 체결 및 이행상태	1) 대리점 및 소매상 등 거래처와의 품질보증, 반품 및 폐기에 관한 계약약정이 규정되어 있고 이를 잘 이행하고 있는 경우 2) 상기 사항이 다소 미흡하게 이행되고 있는 경우 3) “나”에 미달인 경우	가 나 다	
5) 행정처벌유무	1) 공장심사이전 1년 동안 부정, 불량식품으로 소비자단체를 비롯 이해관계자로부터 고발 또는 문제가 야기된 사실이 없고 감독기관으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 2) 상기사항이 1건이 내의 사례가 있을 경우 3) “나”에 미달인 경우	가 나 다	“
6) 불만처리및 로트추적	1) 불만 처리를 위해 시장정보 및 잠재불만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공정 또는 제품에 반영하고 있는 경우	가	

심사항목	심사내용	부분평가	평점
	2) 규정에 의거 로트 추적이 가능한 경우 3) 불만처리규정이 있으며 로트추적이 주로 불만발생시 이루어질 경우 4) “나”에 미달인 경우	가 나 다	
7) 선전 및 표시	1) 규정된 표시사항내용대로 표시나 선전을 할 경우 2) 표시선전내용 규정 표시사항과 다소 상이하여 소비자가 제품종류 및 품질 등급식별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2항”표시 선전사항이 제품종류별 및 품질수준과 상이한 경우 4) “2항”의 사항에 대한 시정요청을 받고 1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가 나 다 다	”
8) 제품의 유통조건별 유통기한 설정 표시	1) 표시가 분명하고, 유통기한 산출방법이 자체반품의 조사관리 및 저장시험과정을 통하여 설정되었을 경우 2) 표시가 분명하고, 유통기한산출방법의 외부 전문 기술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설정된 경우 3) 표시가 분명하고, 유통기한 산출방법이 자체 제품의 유통상황을 조사하여 통계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경우 4) 표시가 분명하지 않고 유통기한 산출	가 가 나 다	

심사항목	심사내용	부분평가	평점
	방법이 유사제품생산공장의 설계기준을 검토없이 따른 경우 5) 표시가 분명하지 않고 유통기한 산출방법이 일반적인 권장용 자료만 고려하여 산출한 경우	다	
종합평가	a = b = c = A B C		

심사항목	평가구분	평점	합격기준
3. 자재의 관리	○원부자재의 규격, 검사방법, 검사방법에 의한 실시사항(자체 또는 공인기관), 자재의 보관을 완제품이 KS수준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규정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품품질개선 및 공정개선 등에 활용하고 있는 경우	A	
	○원부자재의 규격 검사방법, 검사방법에 의한 실시사항(자체 또는 공인기관), 자재의 보관을 완제품이 KS와 동등한 수준을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품품질개선 및 공정개선등에 활용하고 있는 경우	B	B이상
	○완제품의 품질수준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재 사용이나 주요 자재의 품질수준 파악등이 형식적이어서 불량자재가 공정에 투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	C	
4. 공정관리	○공정관리로 중간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각 공정이 안정되어 있으며 작업자는 제조작업표준	A	

심사항목	심사내용	부분 평가	평 점
	우는 예외로 한다. 3) “나”에 미달인 경우	다	
2) 사내표준화와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훈련 정도	1) 부분별, 계층별로 교육체제가 확립되어 있고 계획에 의거 경영간부가 외부 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는 경우 단, 표시승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교육을 전사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 3) 외부교육을 이수한 기술간부가 자체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있는 경우, 단, 표시승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나”에 미달인 경우	가 가 나 다	
3) 사내표준화를 위한 품질관리의 조직적 운영	1) 관계 각부문간 직무가 명확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이루기 위하여 위원회등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경우 2) 검사업무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3)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가 생산부서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경우 4) “나”에 미달인 경우	가 가 나 다	”
4) 품질관리담당자및 기술계인력	1) 품질관리, 생산, 연구개발인력이 적정하게 확보되어 있고 우발적인 문제에 대하여도 대처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

심사항목	심사내용	부분 평가	평 가
	2) 법적수준에 합당한 품질관리 담당자가 품질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3) 자체설계능력은 부족하나 제품에 대한 품질수준을 파악하고 있는 기술자가 있는 경우 4) “나”에 미달인 경우	가 나 다	
5)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	1) 사내규격에 해당사항기준내용 및 회사 운영에 필요한 규정 이 있고 이를 활용 하는 경우 2) 사내규격이 회사실정에 적합하게 규정되고 소관분야에서 숙지 활용하는 경우 3) 전사적으로 사내표준화가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경우 4) 사내규격이 해당사항기준의 내용에 관하여만 작성되고 이를 숙지하고 있는 경우 5) “나”에 미달인 경우	가 가 가 나 다	”
6) 외주공장관리	1) 외주제품의 품질수준이 KS수준이상인 되도록 규정, 관리하고 있는 경우 2) 외주제품의 품질특성이 안정되도록 사내규격에 규정 실시하고 있는 경우 3) 외주제품검사률 외주품의 주요품질특성 파악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 4) 외주품의 수준이 KS 수준인 경우	가 가 가 나	”

심사항목	평가구분	평점	합격기준
	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B	B 이상
	○심사기준에 적합한 검사 및 공정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로 검사 위주의 관리를 실시하고 작업자는 제조작업표준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조건이 불안정하고 중간검사도 미흡하여 품질특성이 수시 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C	
5. 제품의 품질관리	○주요품질특성이 해당 KS규격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고 품질의 산포가 안정되어 있어 제품검사 결과를 주로 품질특성의 분석용에 활용하고 있는 경우	A	B 이상
	○품질수준은 해당 KS규격과 동등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제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품질특성의 산포가 안정되어 있는 경우	B	
	○제품검사는 불량품 선별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품질특성의 산포가 불안정하여 품질수준에 측이 어려운 경우	C	
6. 제조설비사항	○심사기준에 정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방법(점검, 보수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실시하고 특히 예방 정비 점검상태가 양호한 경우	A	B 이상
	○심사기준에 정한 설비를 보유하고 설비의 성능유지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실시하고 있으나 예방정비 점검상태가 다소	B	

심사항목	평가구분	평점	합격기준
	미흡한 경우	C	
	○심사기준에 정한 일부설비가 없거나 보유설비의 성능 또는 관리상태가 미흡한 경우		
7. 검사설비사항	○심사기준에 정한 설비를 전량자사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설비의 정밀, 정확도유지를 위한 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경우	A	B 이상
	○심사기준에 정한 설비를 보유 (일부 외부시설이용)하고 있으며 설비의 정밀, 정확도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관리 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교정검사를 미필하였을 경우, 단, 1개월이내의 개선기회를 부여, 기간중에 교정검사를 필하였을 때에 한함	B	
	○심사기준에 정한 일부설비가 없거나 보유설비의 성능 또는 관리상태가 미흡한 경우	C	

〈표 4〉 표시허가 심사기준에 의한 적합성 검토요령

총 평	7개항목중 C가 없고 A가 3개이상 : 허가 7개항목중 C가 있거나 A가 2개이하 : 불허가
-----	--------------------------------------------------------

심사항목	평가구분	평점	합격기준
1. 표준화일반	6개세항의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구분 평가한다. a가 3개이상 : A a가 2개이상 : B c가 있을 때 : C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		

심사항목	평가구분	평점	합격기준
	내의 개선 기회를 부여하여 평가를 보류할 수 있다 1) 경영간부의 외부교육 미필 2) 기술 및 일반간부의 외부교육 미필		B 이상
(1) 경영간부의 사내표준화와 품질관리에 대한 열의	표 3에 의한 평점에 따라 평가		b 이상
(2) 사내표준화와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훈련 정도	표 3에 의한 평점에 따라 평가		b 이상
(3) 사내표준화를 위한 품질관리의 조적 운영	"		b 이상
(4) 품질관리담당자 및 기술계 인력	"		b 이상
(5) 사내표준화 및 품질관리	"		b 이상
(6) 외주공장관리	"		b 이상 (다만, 공대 정부분을 추가공정 의하 우품에

심사항목	평가구분	평점	합격기준
			의하 의완 의품 의제 의성 의정 의우 의a)
2. 유통관리	○ 8개세항의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구분 평가한다. a가 4개이상 : A a가 2개이상 : B c가 있을 때 : C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내의 개선기회를 부여하여 평가를 보류할 수 있다. 1) 유통관리자의 유통관리지침 교육 미필 2) 대리점 및 소매상 등 거래처와의 계약 미체결		B 이상
(1) 유통제품의 관리	별표 2에 의한 공장심사보고서상의 평점에 따라 평가		b 이상
(2) 유통관리지침 및 교육	"		b 이상
(3) 유통기환경과품등교환대상에 대한 조치	"		b 이상
(4) 계약체결 및 이행상태	"		b 이상
(5) 행정처벌유무	별표 2에 의한 공장심사보고서상의 평점에 따라 평가		b 이
(6) 불만처리 및	"		b 이상

심사항목	평가구분	평점	합격기준
로트추적			
(7) 선전 및 표시	"		b 이상
(8) 제품의 유통조건 별유통기한설정표시	"		b 이상

〈표 5〉 공장검사실시기준

공장검사사유	검 사 사 항
1.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기준중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검사만을 실시
2. 시판품 조사결과 규격표시품이 그 규격에 미달되는 경우	심사기준중 제품의 품질 및 표시사항에 대하여 검사
3. 생산조건이 변경된 경우 가. 공장이 이전되는 경우 나. 생산시설이 50%이상 확장 또는 축소되는 경우 다. 규격개정내용이 상향조정된 경우 라. 주요 원자재의 변경이 있는 경우 마. 공장의 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	심사기준중 제조설비, 검사설비, 제품의 품질 및 표시사항에 대하여 검사 심사기준중 제조설비, 검사설비, 제품의 품질 및 표시사항에 대하여 검사 심사기준중 제품의 품질과 표시사항에 대하여 검사(다만, 규격개정내용이 표시 사항등 경미한 내용으로서 제품의 품질수준 및 생산시설의 변경과 관련이 없는 사항일 경우에는 제품의 품질검사는 생략) 심사기준중 자재의 품질, 제품의 품질 및 표시사항에 대하여 검사
4. 기타 농수산부	심사기준 전항에 의하여 실시

공장검사사유	검 사 사 항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가. 시료채취가 불가능하거나 중량물, 고가품 동일 경우 나. 교육대상자인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다. 기타 농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표 6〉 검사 및 시판품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구분	처 분	조치내용	처 분 대 상
허 가 공 장	1. 주의 경고	1개월 이내 시정결과보고	가. 공장검사결과 표시허가 심사기준에 정한 심사 항목의 관리실적이 미비하여 규격위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기간내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규격위반사항이 경미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다. 품질관리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을 때 라. 농수산부장관이 요청한 보고 및 규칙에 정한 각종 문서의 비치 및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보고한 때 마.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 원부자재의 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바. 교정검사 대상기물에 대하여 국가교정검사관리 규정에 의한 교정주

구분	처 분	조치내용	처 분 대 상
허 가 공 장			기에 따라 교정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2. 표시 변경	1개월 이내 조치 결과 보고	규격위반사항이 제품의 종류 또는 등급을 변경함으로써 시정이 가능한 때
	3. 표시 정지	3개월 간 표시정지	가. 주의경고나, 표시변경의 처분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하지 않았을 때 나. 규격위반사항이 품질을 저하시켜 소비자에게 손실을 준다고 인정되었을 때 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품 선전시 제 2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판매 정지	3개월 간 판매정지	KS표시 명령품목으로서 규격위반사항이 품질을 저하시켜 인명의 피해나 화재의 발생등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에게 손실을 준다고 인정될 때(주의경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하지 않았을 때를 포함)
	즉 시		제 6호에 의한 표시의 제거가 시술적으로 매우 곤란할 때
5. 허가 취소	허가취소	가. 표시 정지, 판매 정지 또는 표시제거처분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동일규격 품목에 대하여 표시정지, 판매정지 또는 표시제거처분을 받았던 허가공장이 처분일자 이후 1년 이내에 다시 표시정지, 판매정지, 또는 표시제거 처분의 사유에 해당되게 된 때 다. 규격위반제품에 사용	

구분	처 분	조치내용	처 분 대 상
허 가 공 장			된 자재, 시설, 장비 또는 공정등으로 보아 규격위반사실을 생산자가 제품생산이 전에 미리 알고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때 라. 표시품의 생산중단기간이 계속하여 2년이상인 때 마. 허가공장이 KS표시허가를 받지 아니한 공장으로 하여금 생산하게 한 제품을 자체생산 KS 표시품으로 위장한 사실이 발견된 때 바. 기술수준이 뒤따르지 못하거나 표준화 및 품질관리 상태가 불량하여 KS표시품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사. 폐업, 규격의 폐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표시품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6. 시판 품포시 제거	즉시제거	표시정지, 판매정지, 허가취소의 경우
승 인 공 장	1. 표시 정지	3개월간 표시정지	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각종 문서의 비치 및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또는 보고한 때 나. 규격위반사항이 품질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품선전시 제 2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승인 취소	승인취소	가. 공장검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나. 표시의 승인을 신청한 자가 공장검사를 위한 출장비 부담을 하지 않은 때 다. 허가공장의 제 5호 허가취소에 정한 사유와 동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